



근무성적평정

근무성적 평정 (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§7)	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(할 수 있다 X). ②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
평정시기 (동규정 시행규칙§4)	① 근무성적 평정,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.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,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.
평정방법 (시행규칙§7)	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 을 만점으로 한다.
평정요소	① 제1평정요소(객관적 평정요소 : 30점) ② 제2평정요소(주관적 평정요소 : 20점) ※ 총경 의 근무성적평정은 제2평정요소에 의하여서만 평정
평정통보 (시행규칙§9의2)	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. 1.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(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한한다) 2.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. 그 밖에 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이의신청 (시행규칙§9의2)	①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①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

15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② 근무성적 평정과 경력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.
- ③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,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④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.